

지방공사 의료원 위탁승인처분 취소청구 재결

위탁 승인을 그 당사자가 아닌 자가 다룰 수 있는지 — 청구인 적격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04. 12. 24.자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위탁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건개요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장은 2004. 12. 24.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31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에 동 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전라북도지사)은 2004. 12. 24. 그 위탁을 승인하였다.

인정 사실

(가) 피청구인은 1998. 11. 9.부터 2001. 11. 8.까지 3년간, 2001. 11. 9.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간 ○○의료원의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의료원의 위탁계약기간이 200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4. 9. 24. ○○의료원 위·수탁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응모한 두 병원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에 경영능력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04. 12. 18. 수탁운영기관을 선정하였다.

(다) ○○의료원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04. 12. 22.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탁운영(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라) ○○의료원장은 2004. 12. 24. 위탁운영에 대한 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4. 이를 승인하였다.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1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

판단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1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장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승인처분

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건 승인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 문서는 재결문의 주문·청구취지·사건개요·인정사실·판단 부분의 발췌임. 당사자의 주장 부분은 생략함. 재결문 원문에는 기관명과 성명이 익명 처리되어 공개되어 있음.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